

# 2008년도 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(의안번호 제1166호)

## 예비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3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7. 2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9. 7. 13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### 2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·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세입·세출결산 총괄설명
-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
-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
- 기금결산보고서
-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
-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서
- 재무보고서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3,630억 9,575만 8천원이며, 징수결정액은 3,774억 1,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,727억 7,451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%가 징수 되었으며, 미수납은 46억 3,948만 9천원 중 결손 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.
-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95억 6,904만 2천원중 징수액은 176억 2,362만원으로 징수율은 90%이며, 체납액은 19억 4,542만 2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,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92억 9,741만

4천원중 징수액은 968억 8,627만원으로 징수율 97%이며, 체납액이 24억 1,114만 4천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,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,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.

- 2008년도 세출예산 총결산은 예산현액 3,630억 9,575만 8천원중 지출액은 2,554억 1,852만원으로 집행율이 70.3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872억 7,973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96억 228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세출결산 총괄부분의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불일치 수송 및 교통 과목의 마이너스 잔액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 향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기 적소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현액 1,985억 3,070만 7천원 중 명사사고 계속비 등 집행액이 798억 5,323만 1천원, 잔액은 16%인 323억 4,407만 6천원이 발생되었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,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,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지연, 관급자재·시설부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,
- 사업예산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전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
- 예산의 이용·전용·이체사용은 없었으며,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, 거류면과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건에 94억 3,350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,
-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4억 2,759만 6천원으로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 광역살포기구입,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 외 2건에 3억 6,39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.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,900백 87만 6천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
-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31종 378건에 59억 4,233만 9천원이며, 취득 등 74건에 6억 72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 22건에 1억 8,726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해당부서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- 본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5. 21 ~ 6. 9일까지 20일간 고성군 결산감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실시되어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 사항이 도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한 세입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
-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시 건전재정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로 인해 발생한 명시이월사업과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이월사업의 부진사유와 특히,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5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가뭄대비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예비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?
- 답 : 해당부서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- 문 : 수송 및 교통부분에 마이너스 집행 잔액이 있는데 가능합니까? 어느 부서입니까?
- 답 : 전년도말 명시이월을 확정해 놓고 집행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. 지역경제과입니다.
- 문 : 국가의 감세 정책으로 교부세가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이며, 공룡엑스포의 수익금이 120억원이 된다고 하니 그 돈을 세입 처리하면 안 됩니까?
- 답 : 교부세가 약 96억원 정도이며 엑스포수익금은 7월말에 정산되고 나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.
- 문 : 고성시장의 체납액을 6월말까지 납부할 것을 각서로 제출하였는데 추진사항은?
- 답 : 아직 체납되어 있으며 압류된 물건을 처분토록 하여 조치하겠습니다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 :

- 2009. 7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